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 튼튼 우량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 튼튼 우량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칸서스 튼튼 우량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0년 01월 1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년 02월 2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개시일 : 2020년 02월 24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칸서스자산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 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다른 투자신탁을 모투자신탁으로 하여 자투자신탁이 되는 방식으로 "**칸서스튼튼 채권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요약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0.01.15.]

칸서스 튼튼 우량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펀드 코드:D1735)

칸서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요약보고서는 '**칸서스 튼튼 우량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입니다. 채권, 단기사채, 회사채, CP, ABCP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단기채권 투자를 통해 이자수익을 추구, 펀드 듀레이션을 1년 이내로 유지하여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펀드수익률 민감도를 완화하여 금리변동 위험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종류 (Class)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0.12%	0.25	0.14	0.42	37	62	89	146	3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31	0.20	0.39	33	67	103	180	406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0.06%	0.18	0.07	0.32	25	46	67	113	2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21	0.10	0.30	23	46	71	124	281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 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형과 C형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해당 목차 및 페이지 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기간	최초설정	최근1년	최근 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	-	-	-	
펀드전체	미설정	-	-	-	-	-
비교지수	-	-	-	-	-	-
수익률변동성(%)	미설정	-	-	-	-	-

(주 1) 비교지수 : KOBI 120 국공채지수 50% + Call지수 5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 채권형)				운용경력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민영기	1971	책임운용전문인력	38	5,540	1.28	0.00	1.28	1.66	21.8	*국민투자신탁 기업연금팀(12개월) *현대투자신탁증권 목동지점(12개월) *현대투신운용 채권전략운용팀(44개월) *현대투지산운용 리스크관리팀(8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 채권운용팀(86개월)

										*한화자산운용 FI운용본부(48개월) *IBK자산운용 채권운용팀(39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13개월)
이동진	199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38	5,540	0.00	0.00	1.28	1.66	4.5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48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7개월)

※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종류	세부구분	주요내용
투자신탁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개별위험	발행회사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채권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자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회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부도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권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위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 해지위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 제2영업일(D+1)의 기준가격 적용 -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 적용	**환매방법**	- **17시 이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지급 -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지급
환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업자	칸서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077-5000/ 인터넷 홈페이지:www.consus.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0년02월22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매입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consus.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칸서스 튼튼 우량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No.	종류(Clas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1737
2	수수료선취-온라인(A-e)	D1740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1742
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1743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1744
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1745
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1746
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174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을 합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모집(판매) 합니다. [모집개시일:2020.02.24]
모집(판매)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등 영업점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칸서스 튼튼 우량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No.	종류(Clas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1737
2	수수료선취-온라인(A-e)	D1740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1742
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1743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1744
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1745
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1746
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174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20.02.00.	최초 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칸서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0층 ☏ 02-2077-50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운용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운용경력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민영기	1971	책임운용전문인력	38	5,540	1.28	0.00	1.28	1.66	21.8	*국민투자신탁 기업연금팀(12개월) *현대투자신탁증권 목동지점(12개월) *현대투신운용 채권전략운용팀(44개월) *현대투지산운용 리스크관리팀(8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 채권운용팀(86개월) *한화자산운용 FI운용본부(48개월) *IBK자산운용 채권운용팀(39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13개월)
이동진	199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38	5,540	0.00	0.00	1.28	1.66	4.5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48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7개월)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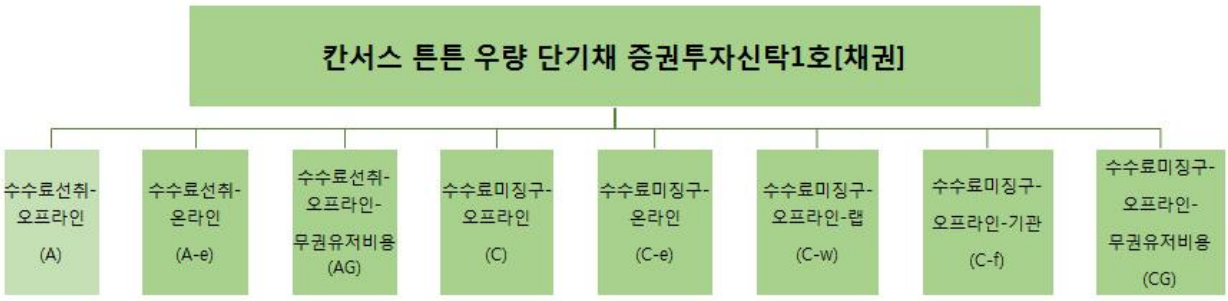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매입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입니다.

※ 비교지수 : (KOBI120국공채지수 X 50%) + (Call X 5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채권 및 어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단기사채의 경우 취득 시 A2+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권을 포함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를 포함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 어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A2+ 이상)
②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③	집합투자증권등	자산총액의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④	채권관련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 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합니다.
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⑥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총액

⑦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③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채권 및 어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① 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① 및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행위.

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11항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 **기본포트폴리오** : 주로 AA-, A1 등급 이상 채권 및 CP, 단기사채 등 편입
▶ **만기보유 및 재투자 전략** : 만기보유 및 재투자를 통해 유동성을 유지하며 안정적 수익 추구
▶ **알파 전략** : 제한적 수준의 Rolling effect 추구

①만기 1년 이내의 채권, 단기사채, 회사채, CP, ABCP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단기채권 투자를 통해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크레딧 분석을 통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합니다. 펀드 듀레이션을 1년 이내로 유지하여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펀드수익률 민감도를 완화하여 금리변동 위험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②회사채 A+ 이상, 단기사채 A2+ 이상, 기업어음 A2+이상 우량 자산 투자하여 채권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금리와 낮은 변동성의 CP 투자로 펀드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기여하는 크레딧 전략을 사용합니다.

※ 비교지수 : (KOBI120국공채지수X 50%) + (Call X 50%)

☞비교지수에 대한 설명
KOBI120 50%에 콜지수 50%을 합성하여 변동성을 축소시킨 Customized Composite Index입니다.
KOBI120 : Index Fund의 합리적 운용 및 중기 성과평가를 위해 잔존 만기 3년 이하의 투자 가능한 채권 120개 종목으로 구성한 지수로 듀레이션은 1년 수준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짧은 만기의 채권, 단기사채, 회사채, CP, ABCP 등 주로 단기 채권에 투자하므로 KIS PRICING(키스 프라이싱 홈페이지 www.bond.co.kr)에서 발표하는 상기의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

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비교지수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험관리전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거래상대방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① 운용전략에 따라 다양한 채권 등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②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펀드에 적정 유동성비율을 유지하며 펀드일정 부분 고유동성 자산(국고채, 통안채, 1일물 전단채) 편입으로 펀드 환매에 대응합니다. 또한 펀드의 설정/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채권편입비율 및 유동성 비율을 조절합니다.

③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투자 유니버스 선정 및 상시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칸서스 튼튼 우량 단기채 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수익 및 채권 가격 상승효과(자본차익)를 기대하면서 낮은 수준의 손실 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개인, 법인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시중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낮은 수준의 시장변동 및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투자원금손실위험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채권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회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사모사채 등)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 중 일부를 조합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발행된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 재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이 만기 상환시의 수익률보다 낮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모사채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사채는 기업이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해 개별적 접촉을 통해 매각하는 채권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청약대상이 50인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에 유가증권신고절차가 면제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와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발행 후 1년까지는 유동성 부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종류	주요내용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생한 회사 또는 계약 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채권 등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회사채를 포함한 크레딧 채권 등은 중도 매각에 따른 할인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에서 환매 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보유 채권을 매각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잔존 수익자의 손실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의 급변동,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대량 환매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매 대금 지급 불가능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의 과소/과대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작은 경우, 크레딧 채권 등의 거래단위 및 이 투자신탁의 분산투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크레딧 채권 등을 편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과대한 경우 조건에 맞는 크레딧 채권 등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채권 또는 국공채 비중을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내용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 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차입위험	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및임의전환 위험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당사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설정일 이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투자규약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칸서스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작성일 현재 기준)에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투자위험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낮은 수준의 위험등급인 경우에도 시장 이자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시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재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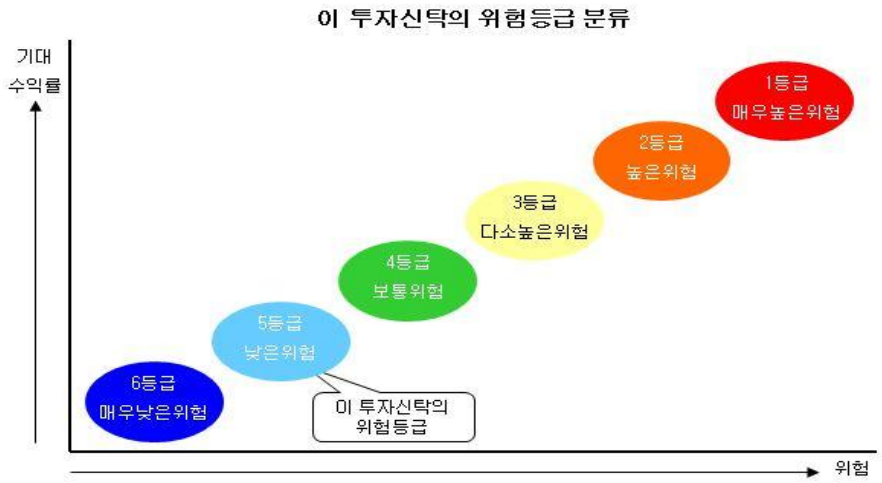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 등급	분류 기준	상세설명 주1)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Active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주2)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Passive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주2)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주2)에 최대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주3)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BBB-/A3 등급편입 가능한 채권형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5)부동산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사업시행목적을 위한 회사 지분증권 투자 및 담보물이 충분치 않은 대여투자, 단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에서 판단함.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주4)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A-/A2- 이상 등급편입 가능한 채권형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5)부동산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사업시행목적을 위한 회사에

		충분한 담보(투자금액의 100% 이상)가 존재하는 대여투자, 단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에서 판단함.
6등급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2) 고위험자산 : 주식, 후순위채,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REITs, Commodity, 파생상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주5)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주된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투자구조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주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헷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 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8) 모자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주9)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10) 파생상품의 편입비는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11)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 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12)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특정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수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 다.
주13)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있습니다.
주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주15)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구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1.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2.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
3.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자, 판매 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
5.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6.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합니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 최초 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7.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자, 판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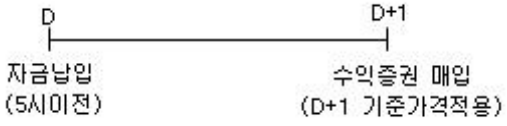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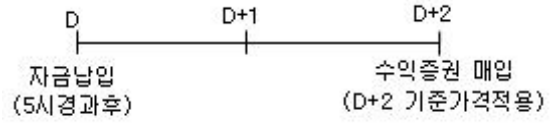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

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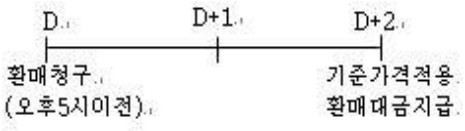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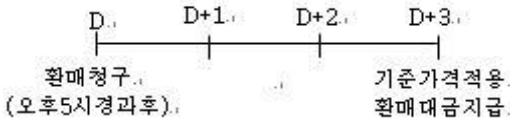

※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일정한 날의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 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이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

	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매일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http://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투자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경우 가격 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국내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lass)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12%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선취-온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	납입금액의	없음	없음	해당사항

라인(A-e)	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0.06%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09%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 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 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없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1)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주2)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합니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 최초 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주3)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주4)IFA . FA의 자문을 받거나 판매사의 권유 없이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한 자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lass)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09	0.14	0.01	0.01	0.25	0.420	0.01	0.26	0.26	0.01
수수료선취-온라인(A-e)	0.09	0.07	0.01	0.01	0.18	0.320	0.01	0.19	0.19	0.0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09	0.105	0.01	0.01	0.215	-	0.01	0.225	0.225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0.09	0.20	0.01	0.01	0.31	0.390	0.01	0.32	0.32	0.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09	0.10	0.01	0.01	0.21	0.300	0.01	0.22	0.22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09	0.00	0.01	0.01	0.11	-	0.01	0.12	0.12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C-F)	0.09	0.01	0.01	0.01	0.12	-	0.01	0.13	0.13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09	0.15	0.01	0.01	0.26	-	0.01	0.27	0.27	0.01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 전으로 비슷한 유형 투자신탁의 비용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기타비용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등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 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 전으로 비슷한 유형 투자신탁의 비용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다.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37	62	89	146	317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37	62	89	146	317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5	46	67	113	248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25	46	67	113	24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3	37	52	85	182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23	37	52	85	1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33	67	103	180	406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33	67	103	180	4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3	46	71	124	281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23	46	71	124	2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2	25	39	68	154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12	25	39	68	1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3	27	42	73	167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13	27	42	73	1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7	55	84	146	331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27	55	84	146	331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입금액의 0.12%, 0.06% 및 0.09%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총보수·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가)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사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

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

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 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최초 설정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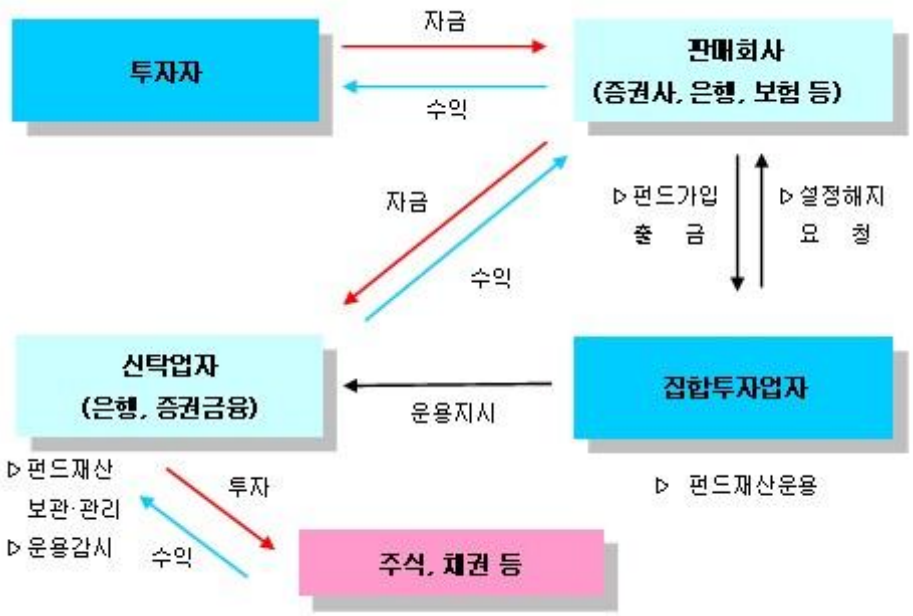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0층 (☏ 02-2077-5000, www.consus.co.kr)
회사 연혁	2004.05.10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설립 2004.09.1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4.10.13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주식형펀드 출시 2005.12.30 금융감독원 선정, 2005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상 수상 2006.01.30 한경Business 선정, 2005년 주식형 Best 운용회사 2007.01.31 2007 대한민국 펀드대상 운용사 부문(주식형 펀드운용) 2007.08.02 대한민국 최초 펀드 특허 획득 (특허청) 2007.09.20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국내 Active주식형부문) 2008.06.27 대한민국 펀드 특허 획득 (특허청) 2009.02.04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2009.12.14 국제투자 성과기준(GIPS) 인증 2010.03.12 KDB Consus Value PEF 설립 2010.12.14 칸서스인베스트먼트3호 "메디슨 등" 삼성전자에 매각 2011.08.25. 한국증권금융 위탁운용사 선정 (주식형) 2012.01.27 2011 더벨 주관 'BEST M&A Seller/PE부문' 수상 2013.12.24 수탁고 4조 돌파/ 연기금풀 개별운용사 선정(액티브주식형)

	2015.10.27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5.11.24 AI사업부문 인프라운용본부 약정액 3조 돌파 2016.09.13 칸서스 튼튼채권탄탄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 2000억 돌파 2017.02.28 공모형 노을연료전지특별자산신탁1호 설정 2018.01.19.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문사모특별자산1,2,3호 설정(약정액 4,780억) 2018.03.26. 한화생명 특별계정(주식형) 일임 및 NH농협생명 위탁운용사 선정 2018.04.27. 운정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사업자 선정
자본금	121.9억
주주현황	HMG D&C(주), NH투자증권, 군인공제회, KDB생명, 보성산업 미래에셋대우(주), 하나금융투자(주), 우리사주조합, 기타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및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①집합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19.03.31'	'18.03.31'	항목	'19.03.31'	'18.03.31'
유형자산	457	192	영업수익	9,238	11,482
무형자산	485	487	영업비용	7,788	9,360
자산총계	15,951	22,183	영업이익	1,450	2,122
예수부채	0	0	영업외수익	88	1,898
기타부채	10,146	7,774	영업외비용	9,112	4,017
부채총계	10,686	8,532	경상이익	-	-
자본금	24,701	24,701	특별손익	-	-

자본/이익잉여금	-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7,573)	3
자본조정	(679)	10	법인세비용	122	14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8,620)	-	당기순이익	(7,705)	(10)
자본총계	5,264	13,651	-		-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2020.01.15/단위:억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사모 투자 전문 회사 (PEF)	투자 일임	총계
형태	증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유형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파생 상품	부동산						
운용 자산	520	1,386	1,982	11	52	1,408	24,709	1,926	330	13,520	0	45,84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여의도동) ☎ 02-3770-88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sf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행위 또는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①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층 ☏ 02-2168-0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대하빌딩 4층 ☏ 02-782-1007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5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kr	www.nicepni.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 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 회(이하"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 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5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1)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 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 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③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소규모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방안

※ 해당펀드는 소규모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방안에 따라,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및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 규모 펀드)인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자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신설한 모투자신탁을 '칸서스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5.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ㅇ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ㅇ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6.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ㅇ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ㅇ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ㅇ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ㅇ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 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방법 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table>
<tr><th>구분</th><th>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th></tr>
<tr><td>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td><td>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table>
<tr><td>평가항목</td><td>세미나, 기업탐방</td><td>조사자료의 질</td><td>정보 및 리서치능력</td><td>중계 수수료</td><td>주문체결 능력</td><td>중개서비스 문제해결/기타</td><td>합계/ 순위</td></tr>
<tr><td>항목가중치</td><td>30%</td><td>10%</td><td>30%</td><td>5%</td><td>15%</td><td>1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각각 1~5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등급구분은 상위 합산점수기준으로 S~C 등급은 각각 4개사로 하며, 나머지는 D등급
* 각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S(각 11%), A(각 7%), B(각 6%), C(각 5%), D(각 3%)를 원칙으로 함</td></tr>
<tr><td>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td><td>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table>
<tr><td>평가항목</td><td>조사자료의 질</td><td>거래체결 능력</td><td>거래 용이성</td><td>시장판단 대처능력</td><td>기타서비스(성실성, 당사와의 관계)</td><td>세미나</td><td>합계/ 순위</td></tr>
<tr><td>배점</td><td>15%</td><td>20%</td><td>15%</td><td>15%</td><td>15%</td><td>2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0~평가항목별 배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합산기준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채권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td></tr>
</table>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투자주체	칸서스자산운용(주)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운용 효율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하고자 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해산하는 경우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 펀드 투자의무를 승계 주2) 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 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주3) 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 지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기구가 아닌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금전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서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수익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